

의안번호	2200657
의 퇴 인	최보운 의원
회 답 일	2024. 7. 4.
추계번호	24C1087

장애평등정책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개정안에 따라 장애인지 교육 등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 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50억 900만원(연평균 30억 2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장애인지 교육(안 제7조)	20	—	—	—	—	20	5
장애평등지표 개발 및 장애평등지수 조사·공표(안 제8조)	75	63	63	63	63	327	65
장애영향평가 및 특정장애영향평가 실시(안 제9조 및 안 제13조)	1,041	1,041	1,041	1,041	1,041	5,205	1,041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4.8	4.8	4.8	4.8	4.8	24.0	4.8
장애영향평가기관 지정(안 제21조)	1,691	1,738	1,788	1,838	1,890	8,945	1,789
장애영향평가지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2조)	200	—	168	120	—	488	98
추가재정소요	3,032	2,847	3,065	3,067	2,999	15,009	3,002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장애인지 통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인적 통계 작성 시 장애 종류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장애 종류별로 구분한 통계(장애인지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7조(장애인지 교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지 교육을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8조(장애평등지수)	(제1항·제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국가의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이를 이용하여 장애평등 정도를 지수화한 지역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여야 함	의무규정
4	안 제9조(장애영향평가 대상)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정·개정·폐지를 추진하는 법령과 장애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함.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는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함	의무규정
5	안 제13조(특정장애영향평가)	보건복지부장관은 시행 중인 법령,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장애영향평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 중인 조례·규칙, 지방자치단체 소관 정책,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장애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특정하여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6조(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8	안 제17조(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장애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둠	의무규정
9	안 제19조(장애영향평가 교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10	안 제20조(장애영향평가 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장애영향평가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할 수 있음. 이때,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11	안 제21조(장애영향평가 기관)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장애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	재량규정
12	안 제22조(장애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장애영향평가 전문인력 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고,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장애인지 통계)	×	○ 현 시점에서는 장애 종류별로 구분할 통계의 대상 목록과 각각의 장애인지 통계 산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2	안 제7조(장애인지 교육)	○	○ 보건복지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안 제8조(장애평등지수)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4	안 제9조(장애영향평가 대상)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5	안 제13조(특정장애영향평가)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6	안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특정장애영향평가)	×	○ 현 시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특정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대상 사업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7	안 제16조(중앙장애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8	안 제17조(지방장애영향평가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	○ 현 시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할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9	안 제19조(장애영향평가 교육)	×	○ 현 시점에서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할 장애영향평가 교육의 종류 및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10	안 제20조(장애영향평가 자문)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1	안 제21조(장애영향평가기관)	○	○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12	안 제22조(장애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 인력의 육성 등)	△	○ 현 시점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집·보급할 장애영향평가 관련 정보의 종류와 전문인력 육성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다만, 정보지원체계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 안 제6조, 안 제14조, 안 제17조, 안 제19조, 제22조 등에 관하여서는 개정안 시행 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추계에 필요한 정보의 부재로 합리적인 추계가 어려워 추계대상에서 제외
 - (안 제6조) 인적 통계 작성 시 장애 종류별로 구분한 장애인지 통계를 산출할 경우 조사 수행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장애 종류별로 구분할 통계의 대상 목록과 각각의 장애인지 통계 산출에 소요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4조)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평가를 위한 연구용역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특정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의 수와 대상사업 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7조)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경우 회의수당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구성할 지방장애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 수와 회의 개최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19조)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실시할 장애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강사비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장애영향평가 교육의 종류 및 횟수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안 제22조)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육성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수집·보급할 정보의 종류와 전문인력 육성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움
- 이 외의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및 여성가족부의 유사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장애인지 교육 실시(안 제7조)

- 개정안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공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지교육은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제공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는 보건복지부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실시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 추계기간 첫 해에 장애인지교육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고 매년 해당 콘텐츠로 공무원 등을 교육하는 것으로 가정
 - 온라인 콘텐츠 제작 단가는 보건복지부 유관 사례의 단가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해당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보건복지부는 공무원을 위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2018년 ‘인식의 새로고침’ 온라인 콘텐츠를 개발하여 2019년 온라인 교육 플랫폼에 탑재하였고, 이를 2024년 현재까지 활용
 - 2018년 ‘인식의 새로고침’ 온라인 콘텐츠 개발비는 2천만원(재생시간 62분)
- 추계결과, 공무원 등에게 장애인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000만원(연평균 500만원)으로 추계

[표 2] 장애인지 교육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애인지 교육 (안 제7조)	20	-	-	-	-	20	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장애평등지표 개발 및 장애평등지수 조사·공표(안 제8조)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장애평등지표와 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국가 및 지역의 장애평등지수를 매년 조사·공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계기간 중 첫 해에 국가장애평등지표와 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하고, 둘째 해부터 장애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추가재정소요는 여성가족부의 국가 및 지방 성평등지수 개발 및 조사·공표를 위한 연구용역비 지출 사례를 적용하여 추계
 - 여성가족부 사례의 단가를 적용하되, 해당 단가가 추계기간 유지된다고 가정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산출
 - － 여성가족부는 2019년 ‘국가 성평등 지수 개편 및 활용 방안 연구’를 위해 약 3천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하였고, 2011년 ‘지역 성평등 지수 표준안 개발연구’에 약 4,500만원의 연구용역비를 지출
 - － 또한, 여성가족부는 매년 국가성평등보고서 및 지역성평등보고서를 각각 발간하고 있는데 2021~2023년 보고서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비는 각각 2,700만원, 3600만원으로 유지됨¹⁾
- 추계결과, 국가·지역장애평등지표를 개발하고 장애평등지수를 조사·공표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3억 2,700만원(연평균 6,500만원)으로 추계

[표 3] 장애평등지표 개발 및 장애평등지수 조사·공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국가장애평등지표 개발	30	—	—	—	—	—	—
지역장애평등지표 개발	45	—	—	—	—	—	—
국가장애평등지수 조사·공표	—	27	27	27	27	—	—
지역장애평등지수 조사·공표	—	36	36	36	36	—	—
추가재정소요 합계	75	63	63	63	63	327	6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1) 국가성평등보고서의 연구용역 계약금액은 2021년 2,681만 8,180원, 2022년 2,690만 9,090원, 2023년 2,690만 9,090원이었고, 지역성평등보고서의 연구용역 계약금액은 2021년 3,690만 9,090원, 2022년 3,581만 8,180원, 2023년 3,590만 9,090원으로 소액의 차이가 있었으나 십만원 단위 어림값 수준에서 비용이 유지되었으므로, 해당 수준에서 단가가 유지된 것으로 가정

다. 장애영향평가 및 특정장애영향평가 실시, 장애영향평가 자문 위탁(안 제9조 · 제13조 · 제20조)

□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장애영향평가 자문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운영비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장애영향평가 및 특정장애영향평가 실시에 소요되는 운영비는 여성가족부의 유관 사례의 단가를 적용하되 추계기간 해당 단가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센터를 통해 중앙·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사업발굴 및 심층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2024년 5억 9,700만원의 예산(전년동)을 편성
 - － 또한, 여성가족부는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과제관리 및 이행점검을 위해 2024년 4억 4,400만원의 예산(전년동)을 편성
-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장애영향평가 및 특정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하는 데 추가재정소요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는 해당 사업의 수 및 평가 방법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본 추계서에서 고려하지 않음
 - － 실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영향평가 및 특정장애영향평가를 수행할 때 연구용역비 등이 추가로 소요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추계결과, 장애영향평가 및 특정장애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장애영향평가 자문을 위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2억 500만원(연평균 10억 4,100만원) 이상으로 추계

[표 4] 장애영향평가 및 특정장애영향평가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장애영향평가 및 특정장애영향평가 실시, 장애영향평가 자문 위탁 (안 제9조 · 제13조 · 제20조)	1,041	1,041	1,041	1,041	1,041	5,205	1,04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안 제16조)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두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위촉 위원에 대한 회의수당만 있다고 가정하고,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회의수당 단가 및 회의개최 횟수를 적용하되 회의수당 단가는 추계기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여성가족부의 중앙성별영향평가위원회는 총 15인 중 8인이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되고, 2021~2023년 회의 1회당 위촉직 위원에 지급한 회의수당은 1인당 15만원이며, 2023년 4회의 회의를 개최

- 추계결과,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2,400만원(연평균 480만원)으로 추계

[표 5] 중앙장애영향평가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위촉직 위원 수(명)	8	8	8	8	8	—	—
회의 수당 단가(만원)	15	15	15	15	15	—	—
회의 개최 횟수(회)	4	4	4	4	4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4.8	4.8	4.8	4.8	4.8	24.0	4.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다. 장애영향평가기관 지정(안 제21조)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장애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센터 운영 지원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여성가족부는 성별영향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센터를 지정하여 운영

- 성별영향평가센터는 중앙 1개소, 지역 16개소가 있음
- 여성가족부는 중앙 성별영향평가센터에 3인, 지역 성별영향평가센터에 2인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총 35인)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할 장애영향평가기관의 수는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센터 수와 동일하고, 지원 단가는 성별영향평가센터에 대한 2024년 지원 예산액을 기준으로 2022~2024년의 연평균 예산 증가률에 따라 추계기간 변동한다고 가정

[표 6]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센터 인력 1인당 지원 단가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연평균 증가율
성별영향평가센터 1인당 지원 단가	43.20	44.57	45.68	2.8

자료: 여성가족부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추계결과, 장애영향평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89억 4,500만원(연평균 17억 8,900만원)으로 추계됨

[표 7] 장애영향평가기관 지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인건비 지원 대상자 수(명)	35	35	35	35	35	-	-
인당 지원 단가(만원)	4,830	4,967	5,108	5,252	5,401	-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1,691	1,738	1,788	1,838	1,890	8,945	1,789

주: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바. 장애영향평가시스템 구축·운영(안 제22조)

- 개정안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체계를 구축·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여성가족부의 성별영향평가시스템 구축 사례를 참고하여 추가재정소요를 추계
 - 여성가족부는 2009년 성별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2021년과 2012년, 2021년과 2022년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

[표 8] 여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시스템 구축 및 고도화 비용

구 분	2009	2011	2012	2021	2022
내 용	성별영향평가 시스템 구축	성별영향평가시스템 고도화			
소요 비용 (백만원)	200	168	120	103	250

자료: 여성가족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위 사례를 참고하여, 추계기간 첫 해 장애영향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 3차 연도와 4차연도에 각각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가정
 - 시스템 구축비 및 시스템 고도화 비용은 여성가족부 사례를 적용하되, 단가가 매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추계결과, 장애영향평가시스템 구축·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4억 8,800만원(연평균 9,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9] 장애영향평가시스템 구축·운영에 대한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구 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연평균
장애영향평가시스템 구축·운영 (안 제22조)	200	-	168	120	-	488	9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 본 추계는 추계가 가능한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